

제43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5월20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1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상정된 안건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3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
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3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3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3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3
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3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3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3
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3
1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3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3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3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3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4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4
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4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전반기 국회 우리 중기소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

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결단 덕분에 미국의 상호관세, 중동 전쟁 등으로 야기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입법 지원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애써 주신 중기벤처부 등 정부 관계자, 성소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1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56)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10시05분)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혁진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경우에 지역공동체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의 고용·자립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따라서 설립되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범위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외에도 이미 유사한 설립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형성된 조문 체계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3호와 4호로 새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호와 7호로 순서를 조정하여 신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입니다.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지난해 9월과 올 3월 달 소위 때 상정이 된 바 있고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와 단체들의 의견들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저희가 의료법인 포함에 대해서 신중 검토 입장은 총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그리고 개별법에 육성 근거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관련 협·단체의 이견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비영리법인이나 육성 근거 부재 쪽은 복지부 등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든지 고용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타 비영리법인과 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검토를 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 협·단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김성원 의원님 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허종식 의원안은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복지부 의견 등을 했을 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허종식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동의합니다.

○정진욱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안에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찬성합니다.

그런데 원래 중소기업기본법은 의료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그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있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의 규모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자원의 배분에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료법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어떤 형식적 형평성이 아닌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서 자원 배분에 차별하게,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중기부가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위가 부여되는 것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2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 내용입니다.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별로 국제입찰을 거쳐야 하는 조달계약의 하한금액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15페이지 보시면 정부조달협정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보시면 가입국은 양허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에 대해서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양허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 제외가 돼서 국내에서 입법적으로 중소기업 우대 등 국내 조달 정책 적법 운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의 하한금액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 지자체 광역은 3억 5000, 기초와 지방공기업은 각각 7억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와 지방공기업, 지자체가 국가기관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우선조달계약 상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공공조달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기관의 상한금액 2억 3000에 묶여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체와의 우선조달 계약 체결금액 기준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른 고시금액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해당 법률에만 적용된다는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3페이지 수정의견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단서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21페이지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인 고시에 규정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개정안 23조의2 1항에 당사자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이 나오고 2항에 바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요, 여기 중간에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그런 장면들이 누락이 되어서 대리인 선임에 관한 문구를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국민 이해도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위법령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27페이지입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기부장관이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 실시, 현장 방문 점검, 회수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의도치 않은 부정 집행을 예방하고 또 부실기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서 정산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번 R&D의 집행 관리 관련해서 결산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 시정에 대한 일환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를 극복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정부 등의 책무 규정에 정부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지자체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를 모두 다 강행규정으로 일률적으로 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수정의견은 일단 현행법상 시책 수립 주체별 역할 분담체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재량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항을 분리해서 나눠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38페이지 정동만 의원님 안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한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AI 기술평가 모델 도입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호로 규정하기보다는 통합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해 보일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절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42페이지입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검토의견란에 있는 첫 번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지도사 자격 내에 세부전문분야 자격취득자 상호 간에만 시험 면제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간의 교차 응시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차 시험 면제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해당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45페이지입니다.

이재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내용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펀드 운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금지행위를 보시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제공 요구, 반대급부의 제공 조건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위법행위 요구, 그다음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등 자신이나 제삼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대주주 등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발생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5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재관 의원님 개정 내용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해당 계약조건을 무효로 하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개정안에서 불공정 계약조건이라 함은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 회수 그리고 유예기간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투자금 감액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기혁신기업 등 피투자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협상력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공정 투자계약을 체결한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주주의 벌칙과 동일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과도한 제재는 아닌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 VC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조건 설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투자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조항 신설에는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 지적대로 현재 VC협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스타트업 투자유치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제삼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 같은 유사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벌칙보다는 행정처분 부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런 불공정 투자계약 설정 여부의 관리·감독을 위한 중기부장관의 장부·서류 검사 근거 추가 등 일부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정진욱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5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창업기획자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밑에 7호의2를 신설해서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정진욱 위원 예.

○김성원 위원 이 행정처분도 되게 센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지요, 등록을 취소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9항은 지금 의견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59페이지입니다.

박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에 여유자금의 10%를 벤처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벤처투자 대상을 전체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기금관리주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말에 심사해 주셔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유사 취지의 내용을 개정할 실익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 박정 의원님 개정안은 여유자금의 10%를 아예 출자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하는 것임에 반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내용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법문화돼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기획예산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 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하고 거의 같은데요. 이것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로

하게 되면 역효과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선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항은 계속 심사합니다.

9항하고 10항을 나눠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67페이지입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과세정보 요청항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기에 특정·압류할 수 있어서 은닉재산 파악과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채권보전조치에 활용해서 기금 구상권 회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 및 기대효과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6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라고 돼 있는 부분을 동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보다 과세정보와 연관되는 내용임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세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을 수정의견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발의하신 분이 정부 측 안에 동의하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74페이지입니다.

김기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소자본·지식기반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지역 유입과 인구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기술적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 조문의 수정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76페이지 보시면 현재도 제15조의2에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15조의2와 같이 청년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입법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표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노용석 차관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마디하시고 퇴장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동안 소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저희 중기부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노용석 차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권 차관 입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79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미등록 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해서 먼저 선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후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위반 시에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후에는 선 시정명령 그리고 후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고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좀 앞당기고 또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가 발의했는지 참 좋은 법안이네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성소미 정동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주차장, 비 가리게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 취약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할 수 있고 또 시설 노후화 심화로 이어져서 지역 간의 시설 수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간의 시설 수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

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 아주 좋은 법안이야.

○소위원장 김원이 참 좋은, 진짜 기가 막힌 법안을 내 주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95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과 구자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진공 그리고 지역신보, 민간은행 등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원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지원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사전 예방적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하며 정책기관 간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보다 상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칙도 그 하위법령 개정 유효기간을 확보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방금 검토해 주신 대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기준이 지금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제2항과 3항을 추가로 신설해서 제2항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1호 연

채 우려가 있는 차주 또 2호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3호 그 밖에 경영 위기 징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주 그리고 3항에서 '제2항의 연체 우려 차주 등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라고 해서 2항과 3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개정안의 2·3·4는 4·5·6항으로 바꾸고 기준을 저희들이 각 호에 신설함에 따라서 고시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에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할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강승규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02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통시장법과 유사한 개정 내용입니다.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통한 선 행정조치 후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반행위 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상 제약 요인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또한 경제형벌 합리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앞당기고,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이익에 비하여 신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107페이지입니다.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수정의견도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개정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동일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심사해 주신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올해 6월 3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시에 맞춰서 시행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봉 의원님 좋은 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11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정부의 책무 규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 소상공인시책 수립·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미 소상공인기본법 3조 1항에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1항에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을 이미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서 12월 2일 국회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권 차관님, 나가시기 전에 한말씀하시고 나가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으로 관련 정책들 또 법 제도가 잘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석·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산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협조해 주신 강승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정동만 위원님,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항상 꼭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소임 잘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승규 김성원 김원이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정책기획관 이순배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